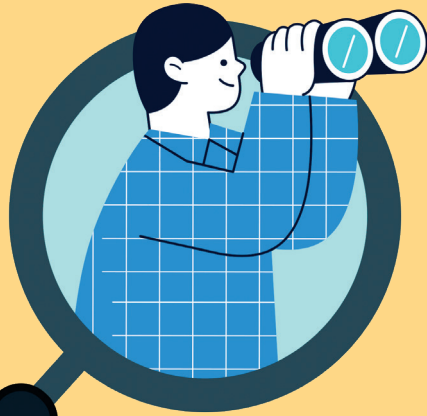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easylaw.go.kr



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5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 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Q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가 정확히 무엇이고, 노인학대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를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노인학대”란?

-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하 “노인”이라 함)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및 제39조의9 참조).
- 노인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공간은 가정(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부양의무자 등) 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 가정 및 시설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로 분류합니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www.noinboho1389.or.kr) 홈페이지 참조].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 누구든지 노인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4제1호).

구분	벌칙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구분	벌칙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취업제한 및 상담 등 치료

-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에 의한 노인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및 추행 등에 해당되는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등을 할 수 없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제1조의2제2호·제5호).
-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
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
법」 제39조의16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수사기관(☎ 112) 및 정부민
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
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진행절차

- 전화 또는 신고앱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면, 이후 다음
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참조).
 - 신고접수(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 현장조사(학대피해
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 학대여부 판단(지역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학대피
해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사후관리(노인학대 재발방지)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노인
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비밀누설의 금지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3호).

Q 최근 들어 옆집에 사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도 아닌데,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나요?

A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및 수
사기관(☎ 112)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신고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의사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내 용
1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3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 응급구조사
12	• 의료기사
13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의 공무원
16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위반 시 제재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은 제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Q 저는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그 종사자에게 1시간 이상의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종사자, 의료인 등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 노인학대 예방 교육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1항).
-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2항 및 제3항).

인권 교육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

- 인권교육은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집합 교육, 방문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인권교육 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및 제2항).

Q 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70대 노인인데, 아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당분간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고 싶은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함)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곳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1항 및 제3항).

쉼터 입소 대상자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함)의 입소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5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1항).
 -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입소 보호기간

-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3항 본문).
 - 다만,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3항 단서).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사·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 시킬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제2항).

쉼터 서비스 절차 및 내용

- 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1).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 학대피해노인의 건강검진 지원
- 쉼터의 서비스는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 입소 의뢰 → 입소대상자 결정 → 입소 결정 및 안내 → 건강진단 → 입소 →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상담 → 퇴소” 순서로 진행됩니다[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www.cb1389.or.kr) 홈페이지 참조].

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노인범죄, 학대피해노인, 신고의무자, 노인학대예방, 피해노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지킴이, 학대행위자, 학대노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전용쉼터, 입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자